

##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

제정	1996. 3. 1	조례 제 21호
개정	1998. 10. 8	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1999. 4. 3	조례 제 190호
	2001. 11. 10	조례 제 353호
	2005. 7. 29	조례 제 601호(지방공무원 정원조례)
	2005. 10. 5	조례 제 679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2조(구성) ①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실·국장이 되며,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7. 10. 2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삭제 <1999. 4. 3>
2. 삭제 <1999. 4. 3>
3.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2. 12. 11>

제8조(간사)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<개정 2005. 7. 29, 2005. 10. 5>

제9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9. 4. 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1. 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7. 29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79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

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⑧ 까지 생략

⑤⑨ 「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⑥⑩ 부터 ⑧③ 까지 생략